

#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5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7. 7. 27. ~ 8. 18.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 기관 소속 임직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 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사 무관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관계 법령

### □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개정 2001.1.1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2005.5.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⑧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 □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10, 2001.3.27, 2001.12.19, 2004.12.3, 2005.11.3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③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④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전문개정 2002.1.4]

#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

소관부서 : 환경국 수질관리과

(제정) 2003-10-31 조례 제 319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하수관측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등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시설 (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설치는 지하수의 이용실태와 수질환경을 고려하여 적정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산정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 의회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소속 임직원
4.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하수 또는 환경영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자  
④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영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조례 제3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